파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시 보

제1742호

2019년 8월 23일 (금)

차 례

입법예고

○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공고 제2019-154호 파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공고 제2019-155호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관련 지원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3

○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공고 제2019-156호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등 협력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5

고 시

○ 파주시 고시 제2019-213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 7

○ 파주시 고시 제2019-214호 도로명주소 고시 …… 8

공 고

○ 파주시 공고 제2019-1343호 부의안건 공고 …… 9

회람									

발 행 : 파 주 시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공고 제2019-154호

파주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환경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환경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에 명시된 지방의제21의 명칭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권리 및 책무로 변경하고 시민의 권리 명시 (안 제6조)

나.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 종합계획'으로 변경 (안 제9조, 제11조)

다. '도시생태지도'를 '도시생태 현황지도'로 변경 (안 제10조)

라. '지방의제21'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 (안 제16조)

마. '지방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변경 (안 제21조)

4. 개 정 조 례 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1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환경보전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우편번호 10932), 2층 환경보전과

○ 전화 : 031-940-4451/ FAX 031-940-445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환경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공고 제2019-155호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관련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관련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관련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가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칙 제명을 변경하고 농작물 피해지원 비율을 생육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금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제명「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안 제1조)

나. 농작물 피해지원금의 지원 비율을 생육단계별로 구분하여 파종기는 100분의 40 이내, 중간 생육기는 100분의 60 이내, 수확기는 100분의 80 이내로 규정 (안 제4조)

4. 개 정 조 례 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1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환경보전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우편번호 10932), 2층 환경보전과

○ 전화 : 031-940-4451/ FAX 031-940-445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공고 제2019-156호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등 협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등 협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3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등 협력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파주시 직제개편에 따른 협의체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환경정책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환경업무 담당 단장(국장) 및 농업기술업무 담당 소장”으로 변경 (안 제3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안 제5조)

4. 개 정 조 례 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9월 12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입법예고’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환경보전과)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우편번호 10932), 2층 환경보전과

○ 전화 : 031-940-4451/ FAX 031-940-445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등 협력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파주시고시 제2019-213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3일

파 주 시 장

1. 고 시 일 : 2019년 8월 23일
2.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1-940-48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 1부. 끝.

파주시 고시 제2019-21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23.

파주시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 1432 외 2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토지정보과(☎940-489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8.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파주시 공고 제2019-1343호

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2019. 9. 3. ~ 9. 11.)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의안건

- 파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1차

2019. 8. 23.

파 주 시 장